##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33

발의연월일: 2021. 5. 17.

발 의 자:김경만・양정숙・윤재갑

이동주 · 김영주 · 윤건영

민형배 • 이규민 • 김정호

양향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59.4% 수준이며, 대기업 재직자의 근속연수는 10.7년인데 반해 중소기업 재직자는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함.

또한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늘어난 상시 근로자 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제29조의7, 제30조 및 제30조의4).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1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200만원"을 "1,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70만원"을 "1,1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①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	
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	
제사업에 <u>2021년 12월 31일</u> 까	<u>2024년 12월 31일</u>
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	
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	
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	
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	
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	
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 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 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 ②·③ (생 략)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중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①
2024년 12월 31
일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 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 을 곱한 금액
-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 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 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 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 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

1
<u>1,500만원</u>
<u>1,600</u> 만
원
2

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 ⑧ (생 략)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 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 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 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 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 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 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フト
<u>1,000</u> 만원
나
1,100만원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u>2</u> 024년 12월 31
<u>일</u>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 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 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 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 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 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 분할 · 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 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하다.

#### ② ~ ⑨ (생 략)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저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u>2021</u>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 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

() () (원 레 기 기 이 )
② ~ ⑨ (현행과 같음)
세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u>2024</u>
<u>년 12월 31일</u>

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② ~ ⑥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